

#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지역경제과)

의안번호	제134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 (2023. 5. 23.)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 1. 제안이유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영업자의 협조에 대한 사항(안 제7조)
-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2023. 4. 13. ~ 5. 3. (20일간), 의견 없음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북구 관내 **착한가격업소<sup>1)</sup>**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출 된 것으로,
-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sup>2)</sup>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기준<sup>3)</sup>**·절차·요건 및 관리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 맞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여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였음.
- 우리구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물가 안

---

1) **착한가격업소** :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자치부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준** : 평점 총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유지

- 착한메뉴 비중(25), 가격수준(30), 이용만족도(20), 위생(20), 공공성(5)

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17개를 지정하여 물품지원(대부분 쓰레기봉투), 환경개선(인증표찰), 방역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우리구 상반기 예상 교부금은 1,612만원(국비 483만원, 시비 1,129만원)임.

○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2023. 2월 현재)

구분	22상	계	외 식 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계	한식	일식	중식	경양식	기타 외식	소계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
계	844	834	523	420	8	40	10	45	311	49	241	4	1	16
종로구	21	19	9	6			1	2	10		8		1	1
중 구	14	13	10	9		1			3	1	2			
용산구	20	20	19	14	2	1	1	1	1		1			
성동구	18	16	7	6		1			9	3	6			
광진구	43	48	22	14		2	1	5	26	5	20	1		
동대문	13	18	14	13		1			4		4			
중랑구	32	34	16	11		4		1	18	1	14	1		2
<b>성북구</b>	<b>18</b>	<b>17</b>	<b>14</b>	<b>13</b>			<b>1</b>		<b>3</b>	<b>1</b>	<b>2</b>			
강북구	21	20	8	7				1	12	3	8	1		
도봉구	46	46	29	19		5		5	17		16			1
노원구	20	18	9	7		2			9	2	7			
은평구	20	25	18	16	1			1	7	1	6			
서대문	42	44	26	22		2		2	18		17			1
마포구	49	50	25	19	1	1		4	25	2	22			1
양천구	24	24	10	7		3			14	2	11			1
강서구	27	24	9	8		1			15	1	13	1		
구로구	59	53	28	24		2		2	25	4	17			4
금천구	39	39	21	18		2		1	18	7	8			3
영등포	23	23	15	12	1	2			8	1	7			
동작구	94	87	61	52	1	2	1	5	26	9	17			
관악구	49	48	33	25	1	1		6	15	2	12			1
서초구	8	13	13	10			3							
강남구	83	76	73	59	1	3	1	9	3		3			
송파구	47	44	25	20		4	1		19	4	15			
강동구	14	15	9	9					6		5			1

○ 주요 제정내용

- 안 제1조(목적)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을 명시
- 안 제2조(정의) :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로 정의하였음.
- 안 제3조(지정 및 취소)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함.
- 안 제4조(이용 활성화) :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규정
- 안 제5조(지원)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고객의 편의 등을 위한 소모품 지급, 홍보,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등을 규정함.
- 안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
- 안 제7조(영업자의 협조) :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

수해야 하며, 구청장에게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8조(포상) :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물가상승 속에서도 지역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격안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있음.

○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큰 효과가 없었으며<sup>4)</sup>,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는 2015년 이후 업데이트된 자료가 없는 등 활동이 거의 중지된 상태임.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외식업계와 개인서비스업계에도 반영되어 운영경비 상승에 따라 착한가게 자격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착한가게 지정 후 홍보 효과가 없는 등 인지도가 낮아 구민이 잘 몰

---

4) 지정현황 : 2011년 가격이 저렴한 업소 2,497개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했고, 2012년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통한 제도의 홍보를 통해 6,576개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2015년 12월 31일 현재 6,536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기준, 위생기준, 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개인서비스업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92개, 부산 525개, 대구 375개, 인천 351개, 광주 342개, 대전 356개, 울산 99개, 세종 26개, 경기 964개, 강원 347개, 충북 319개, 충남 332개, 전북 353개, 전남 357개, 경북 513개, 경남 342개, 제주 138개가 지정되어 있다.

라 이용이 거의 없었으나, 행정안전부와 시에서 적극적으로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조례 제정에 따른 시도별 국비교부율을 반영 할 예정이며, 조례를 제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됨.